

대구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3나326863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3나326863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고령군법원 2023. 11. 14 선고 2023가소7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력

변론 종결 2024. 9. 25.

판결 선고 2024. 11. 20.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군법원 2023. 11. 14. 선고 2023가소 75 판결

주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7.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 고령군 C에서 'D'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E과 2020. 7.경부터 공동으로 돈을 출자하여 마스크이어밴드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E에게 마스크이어밴즈 제작에 필요한 원사 161박스(이하 '이 사건 원사'라 한다)를 공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0. 8.경 이 사건 원사를 돌려받기로 하면서 피고에게 24,51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그 약정에 따라 2020. 9. 18.부터 2021. 3. 16.까지 피고의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합계 24,51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E과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이 사건 원사를 피고가 정리하기로 하였다면서 2020. 8. 28.

원고에게 이 사건 원사를 팔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원사를

24,51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피고에게 약속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원사를 인도하지 않았고, 원사를 인도하거나 지급받은

대금을 반환해 달라는 원고의 독촉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소장 부분의 송달로써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24,51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 측에 먼저 이 사건 원사의 매수를 제의하고 이를 공급하였으나, 그 원사의 규격이 전혀 맞지 않아 마스크이어밴드 제작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피고와 E, 원고는 이 사건 원사에 대한 환불약정을 체결하면서, ① 원고가 지급받았던 물품대금 24,51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고, ② 그 반대의무인 이 사건 원사의 반환의무는 E이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즉, 이 사건 원사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는 E이 부담하는 것이고, 피고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로서 원고로부터 24,510,000원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원사를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을 제1, 4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이 사건 원사는 피고와 E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영위한 마스크이어밴드 제작 사업에 필요한 재료로 공급받은 것인데, 그 규격 등의 문제로 실제 마스크이어밴드 제작에 사용되지 않았다. 이후 피고와 E은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원사의 처리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원사를 반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약정의 체결 경위와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그 약정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E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② 피고는 2020. 8. 28. 원고에게 "나일론 161박스1) kg당 5,500원(부가세까지) 말씀하신대로 9/18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20. 9. 18.부터 2021. 3. 16.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의 계좌로 24,510,000원을 송금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그때마다 그 돈의 1/2을 E의

계좌로 이체하였다(을 제2호증 피의자신문조서 제6면 참조).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가 E과 동업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남아있던 재산인 이 사건 원사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였고, 그 반환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뒷받침한다.

③ 설령 피고와 E이 동업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 사건 원사의 반환의무를 E이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합의가 곧바로 원고에게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약정 당시 이 사건 원사를 원고에게 반환할 책임을 E만이 부담하고 피고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원고와 피고, E 3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이 사건 약정 당시 이 사건 원사가 E의 공장에 보관되어 있었다거나 원고가 E에게 원사의 반환을 요구하기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E은 자신의 공장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원사를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였다. 원고는 2022. 3. 16. 피고에게 전화로 "아니 같이 잡고 안 잡고, 이제까지도 많이 기다렸고, 뭐 전화 한 통도 없고 전화도 받도 안 하고 뭐. 그래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거 E이하고 둘이 사이고 내하고는 관계없는 거라, 그거. 내가 하도 부탁해갖고 그 E... 지면서 어? 저, 저, 사정 내 들어준 거지. 내가 그거 실(이 사건 원사)이 필요해가 산 것도 아니라"라거나 "빨리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라. 실을 주든지. 나는 현금 주면 더 좋고 그렇다. 나도 지금 다음달에 우리 애 결혼식도 해야 되고, 돈이 지금 우리 아들 한 1억 해줘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다 카니까"라고 말하는 등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독촉하였다. 이에 피고는 "예", "그거 알죠", "알겠습니다"라는 등으로 원고의 이야기에 수긍하는 취지로 말하였다(갑 제4호증 녹취록 제1 내지 5면 참조). 이후에도 원고는 2022. 8. 22. 피고에게 전화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독촉하였고 그때도 피고는 "예. 알겠습니다"는 등으로 원고의 이야기에 수긍하는 취지로 말하였다(위 녹취록 제8면 참조).

나. 이 사건 약정의 해제와 원상회복의무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4,15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거듭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그 약정에서 정한 이 사건 원사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소장 부분이 2023. 4. 14.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로써 이 사건 약정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대금 24,15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2)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24,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3. 17.(마지막 지급일의 다음날이다)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3. 4. 14.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1심판결이 위 원금 및 이에 대하여 2023.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만 그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고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판결이 인정한 금액에 따른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규철

판사김준철

판사김승섭

1) 이 사건 원사를 의미한다.

2) 한편,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상법 제57조 제1항), 이러한 행위는 수인이 공동의 목적으로 하는 한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도 없다. 또한, 채무자들 사이에 조합관계, 기타 특수한 공동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7173 판결 참조). 피고는 E과 동업관계를 정리하면서 이 사건 원사를 원고에게 반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약정체결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는 상인인 피고가 동업 당사자인 자신과 E 모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와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원사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도 피고와 E이 연대하여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